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59
----------	-------

발의연월일 : 2025. 7. 25.

발 의 자 : 조승래 · 민형배 · 채현일
김 윤 · 박상혁 · 이정문
진선미 · 황정아 · 박용갑
박정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 관련 보고의 이행,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수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대리인 제도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감독 의무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해외 사업자가 제3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국내대리인으로서의 정당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감독 의무 규정 등을 마련하고 시정명령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와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거나 임원 구성, 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제2항).
- 나.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함(안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제3항 신설).
- 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제7항 신설).
- 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7항 및 제10항 등).
- 마. 국내대리인을 지정,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제7항 전단 중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0항) 중 “제9항까지에”를 “제10항까지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항까지에”를 “제10항까지에”로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0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명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1항 중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의2를 제7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2.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자
- 7의2. 제3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생략)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 <u><후단 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게 임물 관련사업자는 그 법인 중 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u> <u>1.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u> <u>2.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 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 내 법인</u> <u>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 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하</u>

③ ~ ⑤ (생략)

<신설>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⑥
(생략)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여야 한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⑧ · ⑨ (생 략)

<신 설>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0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 · ⑨ (현행과 같음)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명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⑪ -----제10항까지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과태료) ①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⑫ -----

-----제10항까지에-----

-----.

-----.

1. ~ 3.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2.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자

② -----

-----.

1. ~ 7. (생략) <u><신설></u> <u>7의2.</u> (생략) 8. (생략) ③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제3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u> <u>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u> <u>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u> <u>로 자료를 제출한 자</u> <u>7의3.</u> (현행 제7호의2와 같음)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